

新

2003. 12.

-
-
-
-

. 머리말

I-1. 왜 자기자본규제제도가 필요한가?

- 금융기관의 도산 등 금융불안은 경제에 악영향
 - 자금중개 및 지급결제 기능 마비, 국제적으로 금융위기의 전염 가능성
 - 예상치 못한 충격·손실 흡수능력 확보 필요
- BIS의 바젤위원회는 1988. 7월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규제제도 도입

I-2. BIS자기자본규제제도의 변화와 국내도입

자기자본규제제도		포괄 범위	도입시기	
			G10	국내도입
현행	1988 Accord	• 신용리스크	1992년	1992.7월 경영지도 비율
	1996 Market Risk Amendment	• Trading 계정에 대한 시장리스크 추가	1997년말	2002.1월
	New Basel Capital Accord	• 신용, 시장 및 운영리스크 • 감독당국의 점검과 시장규율을 강화	2006년말	?

I-3. Why NBA ?

-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히 반영 못함
- 은행의 리스크 관리기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
- 규제자본 회피거래의 증가
(→경제적자본과 규제자본과의 괴리 확대)
-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기능 및 시장규율
기능 강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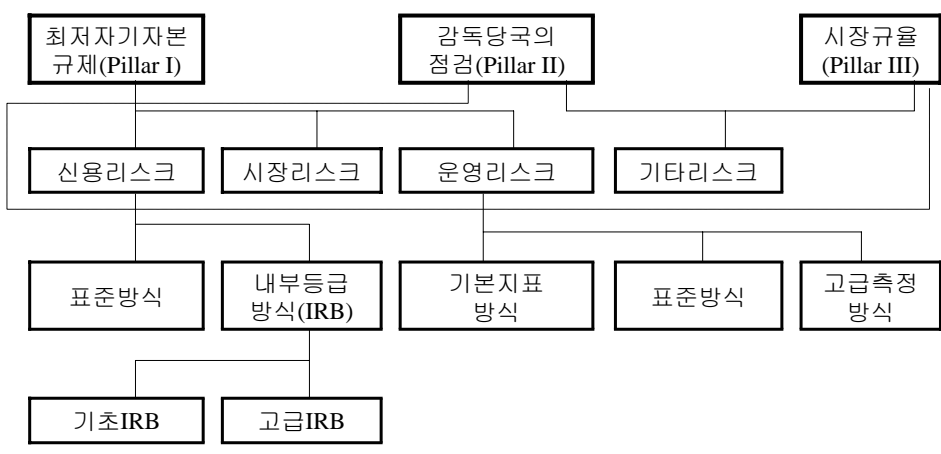
II. 신바젤협약안의 주요내용

II-1. 개요

- 최저자기자본규제(Pillar I), 감독당국의 점검
(Pillar II) 및 시장규율(Pillar III)의 3대 축으로 구성
- 신용리스크 차별화
- 운영리스크 신설
- 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에 맞게 다양한 선택옵션(Not
any more one size fits all.)

<참고> 신바젤협약안의 기본 구조

신바젤협약안 개요



II-2. Pillar I : 최저자기자본규제

- 최저자기자본비율은 현행과 동일한 8%
- 자기자본비율

➢ 분자 : 자기자본

➢ 분모 : 신용리스크위험가중자산 +
 시장리스크필요자본 x 12.5 +
 운영리스크필요자본 x 12.5

← 추가된 부분

II-2. Pillar I : 신용리스크

가. 표준방법 (Standardised approach)

- 익스포져 유형별로 위험가중치 차등화
 - 국가, 은행,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 외부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세분화
 - OECD club rule 폐기
 - * 주택담보대출, 소매여신 등은 고정가중치 적용
- 담보,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등 신용위험경감수단의 인정범위 확대

<표준방법의 위험가중치>

	AAA ~ AA-	A+ ~ A-	BBB+ ~ BBB-	BB+ ~ BB-	B+ ~ B-	B- 미만	미평가
국 가	0	20	50	100	100	150	100
은 행							
1안	20	50	100	100	100	150	100
2안							
3개월 이하	20	20	20	50	50	150	20
3개월 초과	20	50	50	100	100	150	50
기 업	20	50	100	100	150	150	100
자 산 유 동 화	20	50	100	350	자기자본에서 차감		

<고정 위험가중치 적용되는 익스포져>

- 주택담보대출 : 35%
- 소매여신 : 75%
-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: 100%
- 무등급여신 : 100%
- 연체대출 : 150% (단, 20% 이상 대손충당금 적립시 100%, 50% 이상 적립 및 감독당국 승인시 50% 적용 가능)

나. 내부등급방식 (IRB approaches)

- 은행이 측정한 리스크 요소 활용
 → $RW = f(PD, LGD, EAD, M)$
 * PD : 부도확률, LGD : 부도시손실률, EAD : 부도시잔액, M : 만기
- 국가 · 은행 · 기업, 소매여신, 주식, 자산유동화 등 익스포져별 상이한 리스크 가중치함수 적용
- 감독당국의 최소기준 충족에 대한 검증 및 승인 필요

<익스포저별 내부등급방식>

▶ 국가, 은행 및 기업

- 기초IRB 및 고급IRB로 구분
 - 기초IRB : 부도확률(PD)만 은행 추정치 사용
(나머지 요소는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치 사용)
 - 고급IRB : PD, LGD, M(통상 2.5년), EAD 모두
은행 자체 추정치를 활용

<익스포저별 내부등급방식>

▶ 소매여신

- 기초 및 고급내부등급방식의 구분이 없음
- 위험가중치 산정시 만기를 고려하지 않으며
PD, LGD, EAD는 모두 은행 자체 추정치 활용

<익스포저별 내부등급방식>

▶ 주식

- 단순위험가중치 방식(상장주식 300%, 비상장주식 400%)
- 자체 VaR 모형 이용방식(잠재손실 x 12.5)
- 기초IRB방식(LGD 90%, M 5년 가정)
 - * 일반기업대출(선순위무담보기준) : LGD=45%, 기준만기 2.5년

15

<익스포저별 내부등급방식>

▶ 자산유동화증권

- 등급방식(ratings based approach) : 외부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적용(위험가중치 7~1,250%)
- 감독공식방식(supervisory formula approach) : 외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
 - ※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대체할 예정

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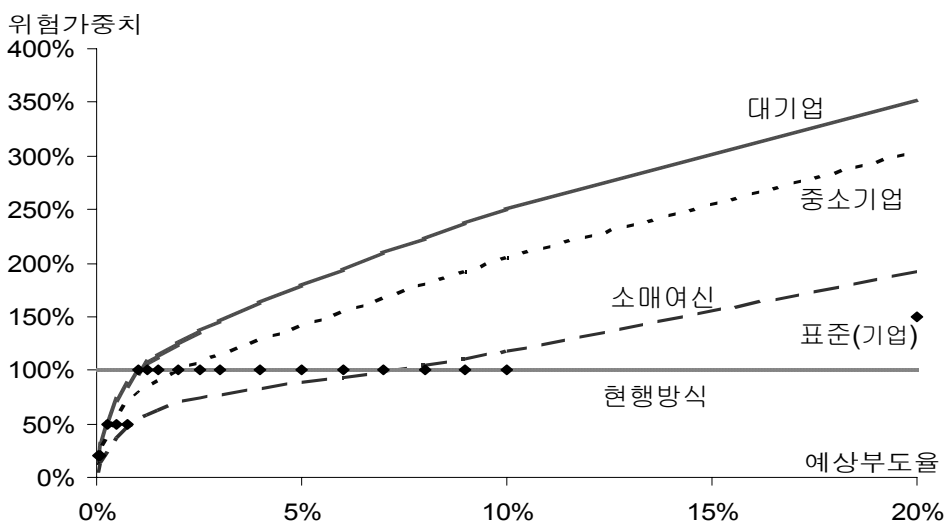
<참고> 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가중치

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가중치

	표준방식	IRB의 등급방식 ¹⁾
Aaa	20%	12%
Aa	20%	15%
A	50%	20%
Baa1	100%	50%
Baa2	100%	75%
Baa3	100%	100%
Ba1	350%	250%
Ba2	350%	425%
Ba3	350%	650%
Ba3 미만 및 무등급	자기자본 차감(1,250%)	자기자본 차감(1,250%)

1) 기준 위험가중치

내부등급방식의 익스포져별 위험가중치



II-2. Pillar I : 운영리스크

- “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, 직원,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”
- 측정 방법
 - 기본지표방식 (BIA) : 과거 3년간 총이익의 15%
 - 표준방식 (SA) : 8개 사업부문별로 총이익의 12~18%
 - 고급측정법 (AMA) : 은행의 내부모형 활용
- BIS의 Calibration : 현재 최저자기자본 규모의 12% 수준

II-3. Pillar II : 감독당국의 점검

- 목적 : Pillar I의 한계* 보완
 - * 리스크 측정시 은행의 재량권 크게 확대, 은행이 직면하는 리스크의 일부만 포함
- 내용 : 자기자본 적정성 평가시 Pillar I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 이외에 금리·유동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소와 경기변동 등 외부요인, 편중여신 등을 함께 고려

II-3. Pillar II : 감독당국의 점검

- 4대 원칙
 1. 은행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보유해야 함
 2.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점검·평가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
 3. 감독당국은 은행이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상회하여 영업을 하도록 지도
 4.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이 최저수준을 하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개입해야 함

21

II-4. Pillar III : 시장규율

- 목적 : Pillar I과 Pillar II 보완
 -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의 감시·평가기능 제고
- 주요 공시 항목
 - 종류별 리스크 수준과 필요자기자본 규모
 - 자기자본의 세부내역 등
- 공시 주기 : 매반기(주요 은행은 매분기)

22

III. 신바젤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

▶ 주요 장점

- 은행 및 감독당국의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
- 규제자본을 경제적자본에 근접시킴으로써 규제자본 회피거래 등 문제점 완화
-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

23

III-1. 경기변동 진폭 확대 우려

-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져 경기변동 국면의 진폭을 확대시킬 가능성(procyclicality)
 - 특히 거시경제여건이 취약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신흥시장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
- Basel II의 경기순응성에 관한 실증분석
 - G10국가의 경우 199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가 재현될 경우 필요자기자본규모가 16~36% 증가 (Jackson et. al., 2002)
 - 멕시코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의 금융위기 가정시 필요 자기자본 규모가 80% 증가 (Segoviano and Lowe, 2002)

24

III-2. 필요자기자본 증대

- 국내은행의 경우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
 - 외환위기 여파에 따른 높은 부도율
 - 운영리스크 부문, 자산유동화 부문에 총당할 필요자기자본 증대
 - 담보관리시스템 미흡에 따른 신용경감 효과 미미
- 반면 선진국 주요 은행은 필요자기자본 규모 감소
 - 리스크관리체제의 차이가 은행간(외국은행 ↔ 국내은행, 국내 선도 ↔ 국내 후발) 경쟁력 차이로 이어져 은행산업의 집중도 심화

25

<참고> 계량영향평가 (QIS)

- QIS 3 : 바젤위원회가 제3차 협약안(CP3)의 확정을 위해 전세계 43개국 350개 은행을 대상으로 2002년 가을에 실시

QIS3 결과

	표준방법	기초IRB	고급IRB
G10 대형은행	11%	3%	-2%
G10 중소은행	3%	-19%	-
기타 국가 은행	12%	4%	-

26

III-3. 은행의 외자조달비용 증대 우려

- 선진은행들의 리스크 민감도 증대로 신흥시장국에 대한 신용공여 축소 또는 리스크 프리미엄 추가 요구 가능성

국내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위험가중치

신용등급	현행 가중치(A)	기초IRB(B)	B-A
AA	20	14.76	Δ 5.24
A	20	17.53	Δ 2.47
BBB	20	47.24	27.24
BB	20	96.66	76.66

※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은행의 신용등급이 BBB(10월말 현재)

III-4.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화

-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여신간 위험가중치 차이 확대로 은행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 전망
→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축 우려

익스포저별 위험가중치 비교

	현행가중치	신탁약안 가중치	
		표준방식	기초IRB1)
투자부적격기업 대출	100%	100~150%	100-353%
주택담보대출	50%	35%	3-48%
소매여신	100%	75%	5-52%

주: 1) 신용등급이 BB(부도확률 0.98% 이하) 이상. 단 투자부적격기업은 부도확률 1%에서 20%까지(BB 이하 등급). LGD 45%(주택담보대출 35%) 가정

III-5. 자산유동화시장 위축

-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엄격한 위험가중치 적용

자산유동화증권 및 기업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 비교

신용등급	표준방식 가정시		
	유동화증권(A)	기업(B)	A-B
A	50	50	-
BBB	100	100	-
BB	350	100	250
B+이하	1,250	150	1,100

- 국내은행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신용보강에 있어 선-후순위구조에 과도하게 의존

* 후순위채 인수비중이 31.4%(2002년 기준)로 미국(5%)에 비해 크게 높음

→ 자산유동화시장의 위축 및 부실채권 정리에 어려움 가중 우려

29

III-6. 역선택문제

- 표준방식 적용시 신용상태가 불량한 기업이 외부신용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

– BB-미만의 경우 150%, 미등급 여신은 이보다 낮은 100% 적용

→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는 신탁약의 취지에 위배

IV. 맺음말

끝.